

영국 학교분쟁의 해결방안 연구

안 승 열*

영국에서 학교분쟁은 1997-1998년도에는 7,700여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6% 증가한 것이다. 1998-1999년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62,900여건을 나타내고 있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초 · 중등학교에서 학교행정당국에 항의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2%의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기저인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단위학교 중심의 책무성 강조, 교육의 수월성 추구하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학교 평가의 공개와 훈육의 부재에 기인되고 있다. 이에 학교분쟁과 학교 통제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LEA)의 권한과 역할을 단위학교운영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인사, 재정, 학사운영 전반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학교 표준과 기본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에 따라 모든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학교정책이나 학생훈육, 적절치 못한 교직원의 행동, 인격모독에 대한 권리구제나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양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사안에 따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학교, 행정당국 학교운영위원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불만이나 고충 행정 행위절차나 적용에 불이익이 있을 때 의견제시를 위한 항소위원회를 두어, 의견을 청취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도,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견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육당국은 모두들 위한 교육적 선택이 매우 어려우며,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이 항상 최선의 판단기준이 되고, 교육현장에서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다. 이를 위하여 학교당국은 지방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일반적 공개방법은 포럼, 상호협력, 공개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규칙 제정 시 의견을 청취하고 확정된 사안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교육의 확대,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와 방법의 다양화, 전통적 교사-학생간의 관계 약화 등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학교현장은 새로운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모범적인 학생으로 간주된 청소년이 학교를 어느 날 갑자기 자퇴하고, 수업시간 내내 주의집중이 안되거나 과잉행동 증후를 보이며, 오히려 일어나지 않거나 시종일관 교사를 무시하는 등 훈육부재와 학교의 학급통제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교육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에 기반 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교육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학급운영과 훈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커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학생들간에 흔히들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던 '집단따돌림'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 · 학부모 · 학교당국간의 분쟁, 사랑의 메라고 여겼던 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 · 학부모와 교사 · 학교간의 첨예한 시각차,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교사와 교사의 복무규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학교 관리자 및 교육행정 기관의 갈등 등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거나 잠복해 있다.

단위학교에서 크고 작은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쟁들이 교육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많은 분쟁들이 해결되기 보다는 회피되거나 감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이 지연되고 약화되어 교육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교육적 해결이 지연된 분쟁들은 끝내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분쟁이 되어 사회적문제가 되고 결국 외부기관의 개입을 불러, 학교 스스로의 문제해결 자생력을 상실하고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가 와해되게 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분쟁의 속성상 학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외부기관도 수습하기 어렵다. 설령 외부 기관의 조정이나 개입을 통하여 해결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뿐더러 학교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간의 관계가 깨질 대로 깨짐으로써 분쟁 해결의 의미가 퇴색되게 된다.

일선 현장에서 분쟁이 커지고 분쟁의 심각성도 커짐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분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당사자간의 분쟁은 흔히 외부에 표출되거나,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고 잠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복이 문제해결이나 갈등해소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으며, 당사자간에 불신만을 증폭시켜 교육현장의 괴동화와 무기력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훈육부재', '학급통제불능', '학교붕괴'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분쟁을 예방하고 치유하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잠재한 갈등관리와 분쟁해결 체제 구축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교육권에 비해 상대적 학습권에 관한 인식이 낮았고, 둘째,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교육적 활동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은 의례적인 사소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분쟁해결위원회'나 쟁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불만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과 같은 적극적 조치보다는 갈등과 분쟁은 학생지도나 학교 감독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소극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갈등과 분쟁 때문에 고충이나 불만을 느끼는 당사자는 합리적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지만, 사소한 문제니까 참아야 한다든지 고충이나 불만을 제기하면 교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양극화된 감정이 분쟁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학교분쟁은 특정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갈등과 분쟁해결에 대한 해결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많은 사례를 축적하여온 영국의 제도를 비교 · 분석 · 고찰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학교분쟁해결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국제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한 교육개혁으로 영국의 학제나 교육운영방법이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과 1993년 교육법(Education Act)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와 학교분쟁해결이라는 단일적 사안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종래 국가나 지역교육청(LEA : Local Education Authority)이 갖고 있던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The Governing Bodies)로 대폭 이양되면서 학교경영 · 인사 · 재정 운영이 단위학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학교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단위학교 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근접처리원칙에 의하여 학교나 교육구, 지역구에 따라 나름대로 분쟁해결 방법이 도입 · 정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잉글랜드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학생훈육의 위기와 대책, 학교분쟁과 인간권리에 관한 법, 학교에서 청소년 문제예방 프로그램의 도입과 문제행동의 법적 절차, 불만이나 고충 처리를 위한 단위학교 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관련도서를 통해 영국의 학교분쟁의 유형과 양태를 분석하고 영국교육고용부(DfEE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의 홈페이지 검색과 관련기관 웹사이트 검색, 해당기관과 E-mail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II. 영국 학생훈육의 위기와 대책

1. 통제 위기의 원인

영국은 이미 80년대 오늘날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학교 통제의 어려움, 교직 무시와 같은 규율 위반, 교사권위에 대한 저항, 학급 내 통제력 상실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학교가 더 나아진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세대보다 더 통제력을 잃어 가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사의 공격행위 증가, 학급 통제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 다양한 학생 문제의 증가 등 차라리 부정부 상태가 낫다고 할 것이다.(Denscombe, 1985 : 31).

이러한 교실과 학교에서의 통제력 약화를 가져온 원인을 다양하게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에는 사회공동체의식 약하나 교육 - 학습의 합리적 방법보다 육체적 억압에 의한 맹목적인 주입을 들고 있다. 또한 폭력적 방법에 의한 관리나 통제로 인한 공격 성향 증가, 복잡한 사회 변화, 급격한 가족체에서 오는 정서적 불균형, 교사의 전문성 저하에 따른 관리능력의 저하 등 복합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 외적통제요인보다는 내적통제요인 즉,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학교 안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Keddie의 연구와 Glaser의 샘플링 연구는 학습장면과 교육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관찰연구를 통하여 교사와 선정된 학습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훈육 부재와 통제력 약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Keddie, 1971: 135-165).

첫째, 학교에서의 학습은 도서관이나 참여학습과 같은 적극적 자기주도보다는 수동적이다. 정적이고 동적이기보다는 비정상적 요인의 긴장을 요구하여, 학습자의 흥미나 떨어진다.

둘째, 교사는 가르치는 과목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지자적 관점'이기 때문에, 학습자를 더욱 정교화 시키고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제가 강화된다.

셋째, 학교구성원, 즉 학습자, 교사, 교직원간의 학습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며 각 부분이 따라 각각의 역할만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적 학습이 저해되어 각 구성원은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넷째, 학습내용이 되는 지식(Knowledge)이 생활과 분리되어서 삶의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다. 지식과 생활의 유리를 가져와 학습에 흥미를 잃어 통제의 소재를 상실하게 된다.

즉 학교에서 창의와 개별성 신장보다는 실제생활과 유리된 교육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소외를 일찍이 경험하여 규범의 아노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방법, 지식에 관한 전지자적관점에 따른 학습자의 수동화, 학습공동체의 와해, 지식의 비활용성에 대한 문제는 당면하고 있는 우리교육 현실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다음 <표 1>에 제시된 규범위반 원인과 해결방안은 비록 영국의 사례이지만 우리 교육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문제 행동에 대한치료와 구제방법은 어느 부분은 강조하여야 하지만, 어떤 요인은 약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표 1 : 청소년 규범 위반 원인과 해결방안

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행동의 제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Governing Body), 교직원(School staff), 학생(pupil), 학부모,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조아래 빈번하게 발생하는 규범위반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학교 당국과 지역교육청(LEA)에서는 이의 감소를 위하여 정책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 학교훈육 방침의 확립

학생을 통제하거나 분별없는 행동을 규제하는 학교 방침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물리적 한계사항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계와 방법을 구성원 상호간에도 인지하고,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어떤 행동은 금지되는 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들에게 알도록 공개한다.

학교장과 수석교사(Head teacher)는 교직원이 행사한 학생규제의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적용할 교직원과 협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교육청(LEA)에서 교부금을 받는 자치학교일 경우는(GMS : Grant Maintained School), 이미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LEA의 어떤 사항과 어떤 모델을 참고하였는지 지역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 이미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범적 학교를 참고 할 수 있으며, 전문적 조언이나 방침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학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에게 규칙준수와 학생 행동유형을 규정한 안내서(Department's guidance)에 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권리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구제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교육법 : Education Act 1997). 국가경쟁력 강화와 학생들의 수월성 추구, 교사의 책무성 강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 · 운영 · 권한에 의하면, 학교에서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적용될 행정행위, 훈육,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훈육 방침의 확립은 학생들을 규제하려는 측면보다는, 학생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학습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선량한 학습자들

보호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¹⁾).

3. 위반사항 규정의 명문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 위반하는 사항으로, 규제하거나 육체적 제한을 가하여 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것 인가도 분명히 해 둔다. 이를 위하여 영국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의 교육개혁과 학생규율의 규제방향은 Education Act 1988과 Education Act 1993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8년 교육개혁법은 교육의 사회적 사명을 공적 선택과 수월성 추구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권한이양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학부모 학교 선택권 강화, 학습의 질 보장 이행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 훈육의 방향을 청소년 보호와 육성, 자율성 신장에 두고 있다.

그러나 1993년 교육개혁법은 영국 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학부모 학교 선택권을 가일층 강화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역할 축소, 공익자금이나 지역발전기금의 확충, 학교운영위원회에 기초한 학교운영 강화, 교육의 질적 통제와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이행검사를 강화하여, 경제와 사회에 팽배한 총체적 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훈육의 지도 방향도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권리의 실질적 수혜가 가능하도록 통제와 조화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도록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와 달리 예상 가능한 규정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명문화하고 이의 위반 시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규칙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위반

시 벌금 위반에 대한 적절한 선도가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운영상 원칙확립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적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2).

? 위반학생 대상 : 단순한 육체적 접촉(밀기, 끌기, 당기기, 잡기 등)

? 위반학생과 부모에게 고지 : 학교에서 급하는 특별한 위반 행동이 분명한 경우

? 간단한 보고 : 자신의 행동과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서 제출(훈련이나 상담이 필요)

? 계속지도와 부모 소환 : 문제행동의 계속발생과 교정의 어려움

? 격리 및 전문가 도움 : 특별한 경우 특수학교 전학, 정신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 경찰의 도움과 조력 : 계속적 폭력과 다른 학생들을 위협할 위험 행동

III. 학교분쟁과 인간 권리에 관한 법

인간 권리에 관한 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2000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간권리에 관한 법(Human Rights Act : HRA 1998)3)은 학교에서의 "공적기능"(public function)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학교당국,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내 교사와 교사가 아닌 직원간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형태의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분쟁 정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법원의 관례가 없는 경우에 이 법

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전 구성원은 인간의 권리존중에 관한 법문화가 단위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불필요한 법적 절차에 의한 법적 대응을 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을 강구하여 제도적 준비를 갖추고 있다.

1. 학교 규율 제정과 적극적 준수

1966년 인권권리에 관한 법인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이래 교육당국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분쟁이나 쟁송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위반사항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라스보그에 있는 유럽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서 자신의 법적 쟁송을 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협약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위반하는 교육당국의 행정행위는 2000년 8월 2일부터는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자유나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이의 구체적인 규정과 사례는 해당 시행령에 명기되고 있으며, 지금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선택과 관련된 문제이다. 예를 들면 1988년 교육법에서 시작되어 97년 법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은 상당한 경우 학교가 '학생을 선별'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영국법에 초등학생은 보호자가 등하교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서 먼 학교에 배당이 되면 부모로서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런 사례가 종종 법원에 제소가 되나 대부분 부모 측이 패소한다. 따라서 학부모는 쟁송을 다루기보다는 교육력 강화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직원과 학생 모두는 유럽 협약에 따라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된다. 법원에 의하여 어떤 사안이 확정된다면, 즉시 적절하고 바람직한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제도변경이나 물적 보상 등 모든 것이 포함된 권리 구제).

특히 이와 관련된 두 조항이 있어 적극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4).

제2조 : 누구도 교육받을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교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철학적 신념과 종교적 믿음과 일치하는 교수(teaching)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 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 다른 관련 조항

제3조 : 고문 금지, 비인간적이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행동 금지

제6조 : 학교제적이나 훈육을 받는 데서 교육당국이나 학교 교직원으로부터 공정한 절차를 받을 권리

제8조 : 학생들의 불시 소지품검사나 학교 교직원과 약속에서 가족생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

제9조 : 학교생활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으로부터, 종교와 양심, 사상의 자유보장

제10조 : 내부고발자(whistle blowing), 복장규정, 교육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이러한 법적 ·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교육부(DfEE)는 법이 잘 적용되고 기능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입법과정을 통하여 현장과 법 사이에서 오는 괴리를 방지하고, 지방교육청(LEA)에서 일어나는 불만사항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항상 절차가 적절한 것인가를 체크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정책의 집행이 투명하고 분명하게 수행하여야 하

며,그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HRA 1998 안내문, 2000).

교직원은 행정행위나 학생제명 기타 교육활동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권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학생 훈육과 처벌을 포함한 어떤 행동도 분명하게 처리되고 동시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러한 엄정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독자적인 관찰과 조사가 가능하며 “균형 잡힌”(proportionate) 결과를 보장하여 준다.

영국 정부는 이미 모든 학교에서 신체적 처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자치학교나 통합학교도 포함). 그러나 교육부 안내서(DfEE Guidance)에는 학생들의 폭력이나 파괴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

2. 학교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참고하는 법률

이외에도 학교와 관련된 분쟁이나 불만 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즉 고용법(The Employment Laws), 성차별금지법(The Sex Discrimination Act), 부주의나 고문 금지법 등이 있다.

DfEE의 독립법률자문단은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하지 못한 영역을 찾아(예를 들자면 우리 나라와 같은 집단 따돌림(bullying)과 같은 사례)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상담을 해 준다. 이와 더불어 지역교육청과 교사집단, DfEE와 교사집단 사이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도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불만이나 고충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달리, 민원인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면 권리는 침해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 절차와 관례에 따라서 해결하며, 이러한 해결방법은 다음 번 입법 제정과 분쟁해결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HRA 1998이 제정될 당시에는 집단따돌림(bullying)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동 법이 시행되는 2000년에는 교육문제로서 이슈화되자 DfEE에서 이의 발생과 학교에서의 대처, 해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로 제정하여 각급 학교와 LEAs에 보내서 학생지도의 참고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분쟁 시 대응, 불만이나 고충처리에서 문제점, 법률적 검토사항이 피드백되어 차기 입법이나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분쟁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 전반에서 권리구제나 침해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많은 법률회사에서 법률강좌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LEAs나 LGA에서도 "인권권리에 보장에 관한 법"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문제나 기타 긴급한 질문이 있을 때는 학교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바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다⁶⁾.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각 해당 지역의 LEA위원회, 교육고용부 홈페이지: DfEE School's A - Z, www.dfes.gov.uk/a-z/hra-1998.html, 유럽 인권보호법원 사이트, 교육법 업데이트 사이트인 www.optimuspub.co.uk 등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자문과 유사 사례를 고찰할 수 있다. 이는 분쟁이나 쟁송사항을 유형별로 혹은 기관별로 잘 정비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재발과 관련 당사자들의 주의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3. 법의 적용과 권리 영역

교육부에서는 HRA 법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최신정보나 자료를 소책자(leaflet)로 제공하지만 각급 학교에서 '법원만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결정적인 권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협약인 인간 권리에 관한 법(HRA)은 교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당국이 국제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위배하는 어떠한 불

법적인 행동에 대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학교 당국이 행하는 교육전반에 관한 불필요한 간섭에 대응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즉 학교당국이 행사하는 훈육, 교육 활동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집단 소송 등 아동교육에 관한 불법적인 행위에 관한 것을 상세히 규정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교육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7).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가이드 라인이나, 규정을 둬으로써 학교의 운영이나 학생훈육에 더 큰 어려움이나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것 같으나, 이렇게 상세화 함으로써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즉, 재정, 인사, 학생교육활동 훈육과 체벌 등이 법적 보호와 질서아래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장(Head Teachers), 교육청(LEAs)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자유롭게 적법행동을 보장받으며, 학교 교칙도 HRA에 위반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교육당국"으로 인식되어 온 "독립학교"도 교육부의 지침과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어, "독립학교위원회"(Independent Schools Council)에서도 법적대응과 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HRA 규정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1) HRA가 각종 학교에 적용되는 권리 영역

- (1) 교육에 관한 권리
- (2) 공정한 절차를 받을 권리
- (3) 성, 인종, 능력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 금지
- (4) 양심과 종교, 사상의 자유

(5) 가족생활과 프라이버시 보호

(6) 소유의 자유

(7) 표현의 자유

이러한 제 영역들은 학교정책결정과 교육에 많은 영향을 준다.

2) 학생제적

학생의 제적은 한정적 경우이지만 가능하다. 주 안내에 따르면 계속되는 기물파괴와 폭력행동에 관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훈육차원에서 제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규정은 HRA에 근거하여 학교기본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에 잘 정비되어 있어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학생제적 절차에 관하여 두 조항을 두고 있다. 제2조 1항은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다. 학생을 학교에서 제적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적당한 학생과 다른 학생들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는 'DfEE 안내서'에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6조는 공정한 절차를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바로 제적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DfEE 안내서에 규정된 훈육위원회(discipline committee)의 개최와 학생의 진술권, 학생의 변호권, 수감의 경우(제 2조 1항)에 대한 법적 절차의 권리가 공정성과 양형의 형평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학생의 권리 보장 및 체벌 금지를 규정한

제3조 : 비인간적 행위와 자존심을 침해하는 처분이나 체벌을 금하는 규정은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어떤 형태로든지 육체적 체벌은 학교에서 금지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인간적 행위나 품위손상을 피

하기 위하여 다른 벌로는 되지 아니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인종 따돌림도 마찬가지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동교정을 할 때는 신체적 처벌을 사용할 수 있다.

3) 복장규정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머리모양이나 옷차림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장규정(dress code)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교직원이나 모든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인종과 종교성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복장 규정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므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토의와 양보가 필요하다. 복장규정 위반 시 위반사항에 관한 적절한 형벌규정(제재규정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형이나 벌은 없습니다)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보석을 착용하는 것은 복장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인데 위반행위시 그 보석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압수물은 언제, 어떻게 돌려주는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른다. 영국에서 교복과 관련된 문제로서는 모슬림, 유대교 같은 특정 종교인의 복장이나 인도인의 민족의상이 해당된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교복과 사복 그리고 장신구 같은 분쟁 정도가 아니고 그 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교육권과 종교권, 그리고 인종자주권이 맞물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이런 복장을 우려하는 학교에서는 입학할 때 교복강제착용 조항은 들어 있으며 부모에게 고지하고 이에 사인을 하게 한다 따라서 입학 할 당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막아둔다. 이러한 복장을 허용하는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종교단체나 민족 단체 학교) HRA 보다 학교 입학서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것만큼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도 엄격하다. 학생이 교복착용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교복착용을 거부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제적을 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훈육 방침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동에는 가차없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소지품 검사

교직원이 마구잡이 식으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항상 학생들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칼이나 불법 흉기 소지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여 한다.

5) 교사의 신체적 제한

학생의 육체적 제한이 가능하다. 사용의 적절한 필요성이 명확하여야 한다. 즉 '적절성'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DfEE의 안내서에도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사가 이러한 육체적 제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6) 학생의 표현의 자유 인정 범위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인종이나 성적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교사가 제한할 수 있다.

7) 법적 행동으로 대처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영국에서도 학교의 결정이나 교육 활동 시 일어나는 경미한 사례에 대해 HRA에 위반된다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제소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절차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 문제사항이 법정 이슈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정까지 간 경우에도 소송 실익이 별로 없어 간단한 사과나 재판비용 정도가 판결의 전부가 된 사례가 많아 그 이전에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에서 위법사례가 명확해지면 공식사과도 하지만 판결 뒤에는 대부분 보상금 시비로 민사소송이 뒤따른다. 이런 경우 해당교사는 면직된다. 법원에 가기 전에 대부분 학교 내 또는 지방정부에 마련된 중재위원회에 중재절차에 의해서 중재된다. 그리고 상당수 해당교사가 해고되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율학교나 유아원일 경우라도 운영위원회나 유아원 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교직원이 불만사항이나 고소장 같은 것을 받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즉시 교직원 노조와 각 지부에 마련되어 있는 법률자문위원회의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8) 보 험

모든 학교는 안전사고나 법률적 쟁송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영국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교육 중에 일어나는 사고, 다른 법률적 분쟁을 야기하는 부분에서 HRA상황하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경우 당해 학교나 LEAs, DfEE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대부분 보험회사와 관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9) 교육활동과 법원 관례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일어나 인사사고에 관하여 법원의 태도는 사고의 결과보다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결과에 이르도록 한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교 분쟁이나 불만이 법원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문제가 다른 법에 의하여 형사사건화 할 경우 법원에서 그 쟁송을 다루게 된다. 형사범이나 다른 법에 저촉될 경우 중재위나 학교운영위의 개입에 관계없이 바로 기소되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측면에

서, 인과 관계가 교육적 활동이며 그 과정이 통상적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도 발생하였느냐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교사에게 고도의 윤리적 책무가 강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수학여행 중 교사의 지도아래 수영하던 두 소녀가 사망한 사례와 수업 중 저항 능력이 없는 9세 된 소년을 체벌한 사례로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윤리의식이 다른 직업과는 달리 좀더 엄격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철저한 안전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망사고 8)

<사건개요> : 수학여행 중 스타인포스벡(Stainforth Beck)에서 13,14세 소녀가 수영미숙으로 익사함 (2000년 10월 2일 북요크셔지방)

<검찰측 의견> :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에는 증거불충분이 인정되어 무죄방면

<리드시 교육청 논평> : 소풍지역에서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익사사고에 대하여 크라운 검찰청의 증거 불충분 판결은 신중한 판단이었다.

이는 어떤 불의 사고나 돌발사안에 관하여 교사가 사전에 학생의 신체적 특징을 파악하고 부모로부터 이양 받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가 하는 점, 예견되는 안전사고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교육권 남용 사례 9)

<사건개요> : 9세된 소년이 학급내에서 잘못된(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을 계속하여) 행동을 계속하여 교실 밖으로 격리하는 과정에서, 소년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 상처가 남

<기소된 교사> : 브랜드리(Brandley), 20년 경력의 여교사

<학부모측 주장> : 교사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요구. 브랜드리 교사가 말하기를 문에다 아이를 밀거나 때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녀가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가슴을 밟는 사실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 측 주장> : 교실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이 계속되어 셔츠를 잡고 밖으로 내보냈으며, 자신의 행동은 교육자로서 전문적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다.

<재판 결과> : 정신적 · 신체적 위자료 100파운드, 재판비용 750파운드, 지역사회봉사활동 140시간

<교사노조 주장> : 문제아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의 확신을 저해할 우려가 염려됨. 충분히 내적(internal procedures)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법정 분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움.

<법원의 견해> : 저항 능력이 없는 9세 소년에 대한 신체적 압박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법으로 심의.

4. 신체적 접촉과 처벌

1997년 교육법 제4장(The Education Act 1997 : Section 4)은 항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교장, 학교당국, 교사들의 물리적 힘의 사용에 관하여 그 기준과 사용방법에 관하여 분명히 하고 있다. 1995년 교육법 550A 장을 보다 구체화시킨 본 법안은 1998년 9월 1일부터 영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일반적인 다른 법률의 적용과 규정이 다른 원칙들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89년 어린이 법 (Children Act) 아래 학교에서 어떤 신체적 접촉이나 처벌이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훈육이나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적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신체적 처벌

550장 A항에 규정은 모든 독립학교와 재정지원학교 (국공립 학교)에서 신체적 제재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신체적 처벌이 금지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고통이나 상처, 인격적 모독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함이다(교육법 1996 : 548-550).

교사가 제지하지 않으면 상당한 상처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신체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목이나 옷의 칼라를 잡거나 다른 방법으로 숨쉬기가 어려운 행동을 가하는 경우
- (2) 꼬집기, 차기, 때리는 행동
- (3) 함세하여 비틀거나 사지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 (4) 발로 차는 행동
- (5) 머리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끄는 행동
- (6) 얼굴을 땅바닥에 밀치는 행동

학생들의 신체적인 벌에 관한 절차는 교육법 시행령 10/98(Circular number10/98)이 잘 안내되어 있다. 신체적 처벌에 대한 구체적 법적용의 안내, 학교정학 및 훈육정책에 대한 구체적 안내와 좀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교육부 안내부서, 체벌에 관한 학교 방침과 처벌규정, 실제적 적용절차, 신체적 어떤 부분과 어떤 행동에 적용하는지 적용방법, 처벌 시 기록방법과 구체적 사건 기록부 구비, 불만사항 처리 절차와 방법, 이외 다른 상황에서 학생들과의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안내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학부모와 관련인사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학교에서 훈육이나 체벌, 기타 신체적 접촉에 의한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만처리 규정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다.

2) 신체적 체벌이나 접촉에 의한 불만처리

각 학교는 교직원이 학생들과 갖는 신체적 접촉에 관한 명백한 규정과 학교 방침을 정하고 책자로 만들어 부모나 보호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한다. 또한 이러한 책자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접촉과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는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하여 학부모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는 학교규율위원회의 절차나 정치사회부의 어린이보호 절차에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부 시행령(DfEE Circular 10/96)에서도 교육 공급자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 수행 중 아동학대금지들 위한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0).

(1) 모든 교직원은 아동학대 금지와 아동학대에 관련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인지한 때로 보고할 의무에 관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2) 모든 학교는 지역아동학대방지위원회(ACPC :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나 아동 편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모든 학교는 ACPC나 지역교육청에서 규정한 아동보호절차를 알고 준수하여야 한다.

(4) 모든 학교는 학생들이 학대받는다는 점이 의심이 갈 때 조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직원은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직원이 신체적 접촉이나 체벌에 의한 소추를 받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5) 아동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고, 담당자는 ACPC나 아동보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모든 지역교육청은 교육당국이 아동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교 분쟁 사건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 일어나는 비인간적 행동이거나 범죄에 의한 기소, 훈육상의 방침 정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훈육위원회나 법원은 신체적 처벌이나 접촉의 사용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의 검토기준은 위원회나 법원 모두 550 A 조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이러한 학교의 훈육적 조치가 학생의 상해나 피해 방지, 규율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이나 가능한 방법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는가가 설명되어야 한다.

IV. 학교에서 청소년 문제 예방프로그램

1. 예방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영국에서 사회적 일탈이나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성향으로 보는 입장보다는 문제행위에 대한 상황적 여건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 등을 점차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1983년 내무성에 범죄예방부서(Crime Prevention Unit)가 설치되었는데 이 조직은 경찰과 유관기관, 지역사회, 각급 학교에서 범죄예방 및 청소년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들로부터 비롯되는 각종사회 문제와 범죄예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15-116).

첫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사후대책보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상황적 환경적 변수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모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응하는 것과 범죄성향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가해자 지향적(offender-oriented)접근이 부활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이 성장한 후에 범죄성향을 갖게 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 유아기의 가족상황과 교육문제 등과 같은 성장요인들과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현재의 생활환경들(약물, 알콜, 고용, 주거문제, 여가시설의 부족등 청소년 환경문제)을 다루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문제 예방분야에서 또 다른 발전은 “지역사회 중심” 활동이다. 이것은 상황적, 가해지향적 접근들에 의존한 것이지만, 개별 문제 상황이나 규범위반자, 잠재적 문제행동가능자 개인만을 다루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수준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 예방분야가 경찰을 포함한 유관 기관(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와 유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청소년 문제의 예방 정책의 초기의 공식적일 단계에는 각 영역에서 독자적인 발전시기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는 다음에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책들이 유관기관들과의 접촉과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활동

영국의 청소년 범죄는 경범죄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처벌 또한 경미하였으며 처벌보다는 계도하는 형태의 제도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청소년들에 의한 중범죄가 늘어나 기존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무성은 처벌보다는 계도하는 형태를 고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런 법망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마약조직은 마약운반역할은 '미성년자'들에게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날로 청소년의 범죄가 흉폭해져가고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학교와 관련된 범죄예방 프로그램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한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24-127).

1) 학교 휴일 프로젝트(School holiday project)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상당수 주변 환경에서 방학 같은 때 마땅히 할 일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실시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찰과 자원 봉사자 집단에 의해 몇몇 도시에서 시행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운동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권태로움으로 야기되는 즉흥적인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부 축구클럽들도 주말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담당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졌다는 의미에서는 대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율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검증되어지지 않았다.

2)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범죄예방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버스 내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공공기물훼손(Vandalism)을 예방하고자 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Go-Ahead Northern 이라는 영국북부에 위치한 버스회사는 약 700대의 버스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버스의 이층이 손해를 많이 입었으며, 대다수의 경우에는 초 · 중학교 학생들에 의해 공공기물훼손이 행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진에 의하여 버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는 실험이 결정되었다. 이 같은 방법은 공공기물훼손과는 별도로 운전자에 대한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어졌다. 비디오 카메라는 버스의 두 곳에 설치하였는데, 하나는 버스 이층의 앞쪽에 설치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아래층의 운전석 위에 설치하였다. 비디오 카메라 녹화장치는 계단 밑에 숨겨 놓도록 하였다. 이 비디오 녹화기는 한 번에 카메라 한대를 녹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녹화할 카메라를 선택하도록 되었다.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버스의 운행과 동시에 운송사들이 지역학교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행동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버스 이용객의 행동을 개선하였으며, 버스회사의 버스수리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절차11)

1) 청소년 관련법

영국에는 법률에 따라 14미만 소년을 어린이(children), 14세 내지 16세 소년을 청소년(youth persons)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보통 17

세 미만의 소년을 통틀어 청소년(juveniles)이라고 부른다.

청소년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성인(adult)이나 청년(young adults)에게 적용되는 일반 법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교 밖에서 행동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의 근간은 1933, 1969년의 소년법(The Children Young Person Act)과 1982, 1988년의 형사사범법(The Criminal Justice Act)등이다. 그러나 1989년 어린이 법(The Children Act)이 제정되어, 1991. 10. 14부터 시행되면서 청소년 보호와 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일반 원칙

청소년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모든 법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은 "범죄를 범한 범인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는 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법원은 청소년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으로부터 격리하고 그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법원이 청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반예방(general deference)과 같은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예방효과를 위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예방효과와 소년법의 재화를 위한 개별적 처분 중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지 신중히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

3) 소년법원(Juvenile Courts)

청소년에 대한 재판은 소년법원(juvenile courts)이라고 불리는 특별히 구성된 치안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소년법원에서의 재판절차는 성인을 위한 보통의 치안법원에서의 절차보다 더 단순하고 덜 형식적이다. 일반공중은 소년법원의 재판을 방청할 수 없지만 기자들의 방청 및 보도는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법원의 승낙이 없으면 청소년의 성명을 밝힐 수 없다.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치안판사들은 일반 치안판사들과는 달리 특별치안판사로부터 선발된다. 재판부는 3인 이하의 치안판사로 구성되며 반드시 최소 1명의 남자와 최소 1명의 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4) 어린이 법(The Children Act)

동 법이 1991. 10. 14부터 시행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보호명령을 선고하거나 책임과 통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은 폐지된 대신 감독명령에 따르는 준수사항에 거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감독명령을 받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에 거주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여서는 안 될 사람을 특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거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 (1) 청소년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유죄인정을 받고,
- (2) 그의 범행이 그가 살고 있는 주변환경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 (3) 범행 당시 이미 보호명령이나 감독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 (4) 범죄의 죄질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이러한 준수사항의 최장기간은 6개월이고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 전에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생활조

사보고서도 받아 보아야 한다.

V. 불만과 고충처리 절차

1. 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¹²⁾

1) 기 능

학교에 따라서 별도의 중재위원회가 존재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주어져 있어 학교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답변 해주고 있다.

1982년이래 학교문제는 학교를 잘 아는 맥락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근접지역해결 방침아래 모든 학교에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결정사항,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을 학부모들에게 공정하게 알려주고, 학교행정업무에 협조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데 있다.

2) 역 할

중재위원회의 역할은 학교 급간에 중요도나 기능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중점적이며, 중등 이상의 수준에서는 학생의 징계와 처벌, 학력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교사가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운 사안, 학부모가 교사나 교직원, 학교정책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고충처리가 우선적으로 해결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영국 교사들이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갖는 어려움 중 중재위에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정례모임에 학부모들의 참여율 저조 학부모위원과 자원봉사자의 임명

(2) 학부모 접촉의 어려움의 해결 사항(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음
: 교사요인, 학부모요인, 지역요인)

(3) 교육청에 관한 학부모의 긴장관계, 상호역할에 따른 사회적 갈등

(4) 교사의 역할에 대한 학부모의 무시나 무관심

(5) 학교에 대한 거부나 정책에 대한 부인

(6) 학교정보나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전혀 모름

이러한 어려운 점을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에서 학교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3) 구성과 목표

(1) 목 표

중재위원회의 목표는 학교 밖과 학교 안의 관계를 증진시켜, 두 집단이 서로 가까워지고 그 역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

① 학부모가 학교를 보다 분명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의 변화 전략과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한다.

③ 학교체제와 기능을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④ 학생들의 학업을 조력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재위원들은 교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준다.

첫째, 많은 학부모들이 다양한 문화적 차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둘째, 학부모나 가족을 대표해서 교육과 훈육에 관한 질문사항을 성실하게 답하여 준다.

교육개혁법에 따라 LEAs의 기능과 역할이 단위학교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복잡해지고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이 활발한 교육활동의 관건이 되기도 한다.

(2) 구 성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 ① 지역사회에 정통하여 지역주민을 잘 아는 사람, 윤리의식이 있고 언어구사력이 좋은 사람
- ② 학교 당국이나 학부모 집단에 대하여 중립적인 인사
- ③ 학교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 ④ 커뮤니케이션 능력, 지각능력, 자아통제력과 사교성이 있는 사람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할 중재위원회 구성원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중재위의 결정이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법원의 결정보다도 더 사회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4) 분쟁해결 활동영역

지역교육구 주민들과 중재위원에게 그들에게 요구되는 분쟁해결 영역이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 것은 다음 표 3과 같다. 이는 교육 통계의 추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¹³⁾.

표 3 : 각급 학교 분쟁 유형

이러한 학교 분쟁유형에 따른 중재 방법이나 해결방안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 중재유형에 따른 해결방안

2. 고충처리 과정

교직원은 학교전반에 관한 불만사항, 고충처리, 교육문제에 제안을 받았을때, 담당자와 어떤 절차를 받아 적용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파악한다.

(1) 제도개선이나 구제 방법 :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불만사항이나 제안 사유, 이는 교직원의 행동으로 야기되는 침해나 적법한 정책이나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가 포함된다.

(2) 협상(negotiation) : 입법, 정책, 적법절차, 계약 등의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불만사항

(3) 조사(investigation) : 고충자나 불만자가 특정인의 행동이나 학습계

약, 정책이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불법적인 행동이 인정되는 경우

판단된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음 <표 5>와 같은 알맞은 절차를 결정한다.

표 5 : 학교 교육에 관한 불만과 고충처리 대응방법

3. 불만과 고충처리의 일반적 절차

4. 분쟁 배제 사항

과거 학교와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공동체 의식이 굳건할 때는 자녀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생기는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문제 당사간에 양보하고 협의 · 개선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을 해 왔다. 따라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관계나 의무사항에 관한 명확한 규정, 또는 합의된 학교 교칙, 교직원 직무규정 등의 세세한 명기의 필요성이 별로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근간에 들어와서 공동체 의식의 와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교육자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고, 또 한편에서는 교육투자의 효과가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다보니 교육 활동 중에서 자녀가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의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면 학부모들은 책임소재를 밝히기를 요구하고 이의시정을 촉구하기보다는 손 · 배상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법적 쟁송 같은 제 삼자의 개입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풍조로 인해 교사나 학교가 법적 쟁송에 휘말려 교육에 투자되어야 될 시간과 경비가 엉뚱한 곳에서 소모되는 심각한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재원의 불합리한 소모를 막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된 각 구성원 그리고 조직들의 권리와 의무가 재조정되고 명시되어야 될 필요성이 급격

히 부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 조사된 영국의 경우를 보면, 교원들의 개인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복무지침(DfEE Guidance)”을 만들어 복무와 윤리적 강령에 관한 자율적 규제와 행동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 스스로의 품위를 유지시키고 엄정한 행동요령과 이에 벗어난 경우 엄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신체적 접촉 · 교육관련사항의 행동, 훈육, 교직원간의 분쟁, 교원노동조합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래 사항들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제기할 수 없는 불만 배제 사항들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교섭이나 제안, 불만사항에서 원론적으로 배제됨을 의미한다.

VI.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영국에서 학교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해결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특징, 학생훈육 위기의 원인과 훈육 방침, 이의 해결을 위한 규정, 신체적 체벌이나 인간기본권보장을 위한 학교분쟁과 인간 권리에 관한 법(HRA), 학교행정당국이 시행하는 학부모의 불만과 고충처리의 일반적 절차와 분쟁소지의 배제사항과 방법, 예방적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프로그램과 문제행동에 대한 일반적 법적 절차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영국에서 학교분쟁은 1997-1998학기 년도에는 77,000 여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6% 증가한 것이다. 1998-1999년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62,900여건을 나타내고 있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통계에 따르면 초 · 중등학교에서 학교행정당국에 항의하는 비율이 1999년 현재 전년도에 비교하여 2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기저인 학부모 학교선택권, 단위학교 중심의 책무성 강조, 교육의수월성 추구하고 국가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수준의 평가에 따른 결과를 학교 순위를 공포함에 따른 학교측의 전문성 부족과 아동 성취도 미달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LEAs)의 권한과 역할을 학교운영위원회(School Governing Body)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인사 · 재정 · 학사운영 전반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학교표준과 기본법(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에 따라 1999년 9월 1일 이후 모든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막강한 것이 되었다¹⁴⁾.

학업성취관리, 학교정책 모니터링, 학교장의 직무수행점검(LPSH : Leardership Programme of Serving Heads), 고충처리, 학교훈육위원회 구성 등 학교운영의 전문분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학교정책이나 학생훈육, 적절하지 못한 교직원의 행동, 학습권과 교수권¹⁵⁾의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나 분쟁의 해결 방법은 영국의 학제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사안(case by case)에 따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상기한 여러 가지 법률 이외에도 각 사안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철저히 제시하고 이의 준수를 통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각별하다는 것이다. 학생퇴학절차¹⁶⁾, 방과후 벌칙으로 학생 남기기, 학생징학 처리 절차, 교직원과 교사들이 잘못할 수 있는 유형별, 사례별 안내서 제작 활용,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위법행위로 추정되는 사안에 관한 규정이나 조사절차의 고시 등 쟁송이 예상되거나 이전에 자주 발생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교직원연수나 각종 훈련을 통하여 계속 반복 교육한다.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업성취를 높이고 미래사회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구유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목표, 비전, 신념을 내면화하고 이를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연결하려는 교육적 시도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학교방문의 날, 정기적인 학부모 면담, 단위 학교에서 학생 명예위원

(PRU : Pupil Referral Units¹⁷), 지역교육청 연합의 PRU제도 활성화로 학교 규율의 준수와 교육수월성 추구,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신뢰회복으로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원만한 사회적 분위기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학교, 행정당국, 학교운영위원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불만이나 고충, 행정행위 절차나 적용에 불이익이 있을 때 의견제시를 위한 항소위원회(A appeals panel)를 두어, 의견을 청취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도, 관련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육당국의 처리가 미온적인 점을 불만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육적 결정이 매우 어려운 선택이며,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이 항상 최선의 판단기준이 되고, 교육현장에서의 모든 결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린다. 이를 위하여 학교당국은 지방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행정절차들을 공개하고 있다. 일반적 공개방법은 포럼(Forums), 상호협력(Co-ordination), 공포(Publication)를 통하여 새로운 행정규칙 제정 시 의견을 청취하고, 확정된 사안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끝으로 분쟁 발생 시 쟁송의 대상은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였는가, 적법한 과정을 제대로 밟았는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의 절차상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분쟁발생과 해결이 다음 번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적 정비로 이어져 사전예방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의 준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분쟁발생을 대비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학교 규율의 제정, 학교정책,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사와 예방책, 철저한 보험제도 등이 정비되어 있고, 이의 엄격한 적용과 위반 시 교직원이나 학생모두 수궁할 수 있는 법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에서의 쟁송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별다른 소송실익이 없으므로¹⁸), 우리 나라와 같이 극단적으로 대처

하거나 상급기관에 항소, 또는 구분별하게 항의하는 일없이 학교당국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한 제도가 우리 교육 분쟁 해결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영국에서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심의하고, 학교 폭력을 비롯한 학교분쟁을 조정 ·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와 같이 현재 단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존의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와 집행적 기능을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각종 학교규범제정과 징벌권 행사 등 입법적 기능을 하는 외에 준사법적 기능을 갖도록 법적 지위와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전향적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중심 학교경영과 함께 전반적인 학교체제의 재구조화라는 부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본 연구의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이 정도의 제언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참 고 문 헌

ABSTRACT

A Study on the School Disputes Resolution in UK

An, Seoung-Yeoul*

School disputes over school admissions are showing a steep increase, as parents compete to find the best places for their children in UK. The number of appeals made against admissions

decis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has risen by 22% in the past two years, according to government statistics. The newly-released figures-for the school year 1997-1998-show 77,000 appeals, an increase of 6% on the previous year, which itself was a substantial increase on the previous year, when 62,900 appeals has been recorded.

All maintained schools will enter new legal categories to empower, for which differently constituted governing bodies are required by the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Head teachers, LEA, and Governing Body's Discipline Committees should have regard to this guidance in discharging their function in relation to school admission procedure and pupil discipline plans, professional integrity, misconduct of teacher and work with children and young persons. But This school dispute resolution methods are very variety that how to use the guidance to application with case by case.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increasing the role of parents on school governing bodies. so, all admission authorities have a duty to polish details of their own arrangements. Every LEAs and governing bodies must publish information about the admission arrangements for school members in their area.

But, Parents request to more clearer information about admissions rules local authorities with the requirement for authorities to produce an explanatory booklet.

There will also be independent appeals panel to adjudicate where parents believe their compliant has not received a fair hearing. Where schools have far more applicants than places, there are often arguments over why children are rejected or accepted and how rules

have been interpreted. The minister accepted that there would continue to be disputes and disappointments over admissions.

주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겸임 조교수

주석1) uk.dfes.homepage.2001

주석2) <http://www.dfes.gov.uk/circulars/10-98/part1.htm>. (검색일 2001.08.29).

주석3) HRA : 이 법의 적용과 학교생활에 관한 문의는 교육훈련부 (DfEE) tel : 0870-000-2288 fax : 01928-79-4248
e-mail : info@dfes.gsi.gov.uk
dfes Homepage. <http://www.dfes.gov.uk>

주 석 4)
<http://www.dfes.gov.uk/circulars/dfeepub/may0010/0500/humanrights/> (검색일 2001. 08.29)

주석5) 교육법 550A 조항(1996) : 체벌과 학생 규제에 관한 규정. 1998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교육법(Section 550A Education Act 1996)은 학교 규칙의 무시, 학생사고나 위험요인 행동,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의 의무'와 교사와 교직원들의 '법적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와 권한은 일반법(common law)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잘못 해석되거나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규정과 행정안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육체적 체벌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제한적으로 체벌을 사용할 수 있다.

※ 예외규정

? 육체적 제한이 적합한 상황인 경우, 즉 교사의 판단에 문제행동을 조

정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 '합리적 물리력'의 의미가 분명

? 합리적 물리력 사용에 관한 학교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학부
모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 학생제재나 통제를 위하여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사고기록부
에 기재하고, 학생들에 관한 어떠한 사건도 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석6) 이하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발췌 요약 정리하였다.

① 영국 정부 홈페이지 웹사이트 : <http://www.homeoffice.gov.uk/hract>

② 인권권리에 관한 유럽재판소 웹사이트 : <http://www.echr.coe.int/>

③ 한국운영방법 부록 A에서 Z까지 : <http://www.vtc.ngfl.gov.uk>

④ 당신곁에 있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웹사이트(JOYS) :
<http://www.open.gov.uk/tsd/judge.htm>

<유용한 참고 도서>

? 법과 권리 : HRA 1998, 지방정부위원회 1999 안내서.

? 독립학교위원(ISC : Independent Schools Council) 안내, 1999.

주석7) 교육법 1996, 어린이 법 1989(Children Act 1989)이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모와 부모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안내에는 학
교가 아동교육을 위하여 부모가 해야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동
의 양육이나 보호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한 간단
한 절차와 법원의 명령 등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의 책임 한계도 분명
하게 한다. 왜 학교가 아동들이 교육문제에 관여하는 이유에 관하여 일
반적 원칙을 안내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문제의 정보
를 주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알려준다. 학교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학부
모가 아련 교육관련 기관이나 지역사회에도 고지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학부모나 교육 이해당사자들이 학교당국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이나
행정절차에 관한 이의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고 자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주석8) <http://www.educationguardian.co.uk>(검색일 2001.07.31)

주석9) <http://www.educationguardian.co.uk>(검색일 2001.07.31)

주석10)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조항 :
<http://www.dfes.gov.uk/circulars/10-95/htm>(검색일 2001.08.29)

주석11) 김용진(1995). 영국의 형사재판, 서울: 청림출판사. pp.183-199.

주석12) 학교운영위원회 시행령 15/98 ;
<http://www.dfes.gov.uk/circular/15-98/1598.htm>(검색일 2001.09.25)

주석13) 일반적 분쟁유형과 불만처리 절차 ;
<http://scotland.gov.uk/library/documents=w9/pps-10.htm>(검색일 2001.03.30)

주석14) <15/98 행정안내>에는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New Framework Governing Bodies)의 구성, 지위, 역할범위, 법적요구사항 등이 상세화되어 있다(<http://dfes.gov.uk/circulars>).

주석15) <가르치기를 거부한 교사노조의 권리를 지지한 법원> 항소법원은 규율을 위반한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거부한 교사들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을 인정하였다. 16세의 규칙위반 소년을 학급에서 교수(teaching) 거부한 학교당국에 관한 결정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년은 서부런던 루이스함 Bonus Pastor School에서 법적 이유로 학교에서 제명되었다. 그 소년은 교원노조에 소속되지 않는 두 교사에 의하여 격리되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원노조에 따르면 allegations를 부인하고, 교사를 위협하고, 학생을 공격하는 등 교실에서 학습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고등법원은 교사들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상급법원도 항소를 기각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안은 학생의 학습권도 존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일수록 더욱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교육당국은 이를 위하여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이것은 HRA나 학교기

본법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경우도 이러한 교육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http://uk.news.yahoo.com/010509/>

주석16) 학부모 및 학생권리구제를 위한 훈육위원회(Governing Body's Discipline Committee)의 의견진술권 및 항소 기회 가 보장됨.

주석17) PRU'S는 특별한 문제시 학교와 협력위 설치, 학원의 참가, 자체적 규율 심사와 준수, 문제행동의 사전조사 등 자율적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주석18) 중재위원들은 통상적으로 부모집을 방문한다. 교외에 사는 경우 통상적으로 하류계층에 속하며,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거의 없다. 이들 학부모들은 학교에 거의 오지 않으며, 항상 주소를 불리게 기재하고, 자주 이사를 다녀 거주지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소재지 파악과 면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 사정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 학생 또한 자신의 가정문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나 가족사항, 주소를 고의로 불리게 기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중재위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주석* Graduates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